

교 환 동 의 서

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동의면적(㎡)	비 고

1. 토지 소유자
- 본인 소유 상기 토지(지상 입목·축과 시설물 포함)를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교환 승낙하는 것에 동의함.
2. 교환 승낙자
- 위의 토지를 교환하려는 자가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교환 승낙자는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.

토지 소유자

성 명
생년월일
주 소

교환 승낙자

성 명
생년월일
주 소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귀하